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법률 제 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4. 12. .
발 의 자 : 정청래 의원
찬 성 자 : 인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9조제2항 중 “必要한”을 “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바,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이 요청한 공문만으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수사기관이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과도한 보고 요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억제하려는 것임(안 제199조제2항)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第199條(搜查와 必要한 調査) ① (생 략) ②搜查에 關하여는 公務所 其 他 公私團體에 照會하여 必要 한 事項의 報告를 要求할 수 있다.</p>	<p>第199條(搜查와 必要한 調査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최소 한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----- -----.</p>